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차 해 영 의원)

의안 번호	26-26
----------	-------

발의년월일: 2026. 2. .

발의자: 차해영, 권인순, 김승수, 오욱자,
이상원,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1. 제정이유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라. 지원사업(안 제6조)
- 마.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관계법령

-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 제5조
- 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
- 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6. 2. 23. ~ 2. 27.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2. “수리활동지원단”이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말한다.
3.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공산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하는데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수리를 통해 생활용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리 문화 확산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 계획
2. 구민참여 확대 및 구민 교육·홍보 방안
3.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4. 수리 관련 정보 수집 및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자원봉사자 운용
3. 수리 문화 확산 및 구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4.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 사업
6. 지역 내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리활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단체, 기관 등에서 수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활동한 사람
3. 제6조에 따른 수리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민 중 희망하는 사람

③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리 문화 확산과 관련한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 수리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자문
4.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술 및 홍보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수리활동지원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부품,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

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조의3(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2. 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
2. 법 제20조제2호: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

3. 제3항제1호: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

4. 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나.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다.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

1)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

2)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고

2.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는 아래 조항과 관련하여 시책추진 관련 비용 발생
- 제6조(지원사업)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수리 자원봉사자 운용,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 사업, 지역 내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등
-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수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활동한 사람 등 10인 이내로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사업 추진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정은아
연 락 처	02-3153-6262